

본협회, '98 「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세미나 개최

본 협회는 지난 '98년 10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양지파인리조트에서 '98년도 공정거래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공정거래법 총론, 경제력집중 및 기업결합규제제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규제 등 공정거래법 및 제도 운영상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기업결합과장, 경쟁촉진과장 및 하도급기획과장의 주제발표와 고려대학교 이기수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회원사 및 비회원사 임직원 65명이 참여하였다. 동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요지

동 세미나에서 첫 번째로 공정위 총괄정책과 이병주 과장은 현재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이에 대한 '81년도 도입에서부터 6차까지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하였으며, 공정거래법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으로는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③ 재무구조의 개선, ④ 기업의 핵심역량의 설정과 중소기업의 협력적인 관계 개선, ⑤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들 수 있으며,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30대 기업집단 계열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②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98년 4월 1일부터 신규채무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2000년 3월말까지 기존채무보증을 해소토록 하고, ③ 재무구조개선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을 통해 손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축소하였으며 또한, ④ 핵심역량의 제고와 관련하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하여 소수주주권 및 오너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



였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내용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감시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신설, 위법행위의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도입,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제도의 폐지, 불복사업자에 대한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사제도의 신설과, 구조조정과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외인정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공정거래제도의 특징과 운영실적 평가 및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이기수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는 특히 재벌과 관련하여 외국(미국, 독일 등)의 공정거래법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법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법 개정이 여러 번 있어 왔다고 하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와 특히 그 집행기구인 공정위는 그 동안 짧은 기간 내에 공정질서확립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이루어 냈으나 규제대상의 무원칙적인 확대 등으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결부하여 국가가 개입할 적소를 찾되 나머지는 시장경제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공정거래제도가 상법, 증권거래법 등 주변영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영역과의 조율도 필요하며 규제수단의 채택과 선정에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경쟁라운드 시대에 대비한 국제규범의 수용작업을 계속하되 우리 기업 고유의 풍토에 맞는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약자의 보호를 통한 실질적 사회정의 실현에 공정거래제도가 일조를 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그 동안의 거품을 제거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하되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과 법 개정시에 반영하는 자세도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1 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와 관련하여 기업결합과 손익과 과장은 지주회사 문제와 관련,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폐해방지를 위한 제한요건을 설정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앞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경우, 부채비율은 100% 이내로 제한하고,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영업부문을 자회사로 독립시키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제한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지주

회사는 직접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타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하므로 부채가 주된 자금조달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의 경우 금융기관의 기업경영감시기능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채비율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부채에 의한 과도한 계열기업 확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최소 5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고, 분사화를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기존 소유주식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를 분리하여 1개 지주회사가 금융·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30대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채무보증을 사전해소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였다.

2 경쟁촉진과 김범조 과장은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공정”이란 “부당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능률적인 경쟁상태를 의미하며 특히 여기에서 “우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뿐 아니라 추상적 위험성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경쟁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사업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①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되거나 침해되었는지, ② 경쟁수단이 공정한지, ③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되었는지 즉, 자유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감수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하였다.

3 도급제도 운용내용에 대하여 하도급기획과 이동규 과장은 하도급법은 '96년 12월 30일에 6차 개정되었으며 최근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결제비중의 증가와 어음만기일의 장기화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자금난과 어음부도율이 급증함에 따라 연쇄부도의 위험으로부터 수급사업자

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관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현행 하도급법상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원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의 위험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규정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8월 1일 하도급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하도급계약대금의 2배를 한도로 하는 과징금부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의 속성상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보복, 거래단절 우려 등의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권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최근 대형건설업체의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사례가 빈발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건설하도급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고 및 직권실태조사 결과는 현재 공정위에서 DB화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계약체결과 정에서 받게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설계, 소프트웨어개발, 엔지니어링활동, 건설자재 등 4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 제정하고 현재 사용중인 7개 분야(건설, 자동차, 전자, 조선, 기계, 전기, 섬유)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개정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건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2개 분야를 신규로 제정하고, 건설, 기계, 섬유, 조선, 전기 등 5개 분야도 개정하여 관련단체 및 업계에 사용토록 권장할 예정이며, 나머지 건설자재, 엔지니어링활동, 자동차, 전자 등 4개

분야는 11월중에 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주요 토의내용

Q '98년 8월 13일에 법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법의 시행예정일은?

A 개혁입법차원에서 현재 여당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시행령도 '99년 4월 1일까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이의신청제도의 취지와, 경쟁제한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A 이의신청제도는 금년 3월에 행정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제절차를 보완한 것으로 이의신청후 행정소송하거나 바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하였음.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고시나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Q 검찰의 제재추적권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차이점은?

A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A사가 특정 금전신탁을 해놓고 B사인 자기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했다면, 현재 금융신용법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관계를 추적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같은 것임. 운용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함.

Q 기업결합신고제도에 대해서?

A 기업결합신고는 사전신고와 사후신고가 있고 4가지 유형이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

기업결합은 ① 합병, ② 주식취득, ③ 양수, ④ 회사설립의 4가지 유형이 있고 이 경우에 특정계열사가 합병하여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여야 하고, 주식취득시는 20% 이상 취득한 경우 신고하여야 함. 대기업인 경우 사전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며, 임원겸임은 사후신고토록 되어 있음.

Q 공정위의 심결과정에서 심사관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의 객관성 확립을 위하여, 심결 과정에 사회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방안은?

A 이는 경쟁법운동에서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데 있음. 현재 4인의 비상임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임기제를 보장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Q 독과점시장에 신규지정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제한적용에 대하여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공정위의 조사방법이 조사절차를 따르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공정거래법상 서류영치, 압수수색권과 검찰의 압수수색권과 공정거래법상 권한의 차이점은?

A 독과점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경우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공정거래법상에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할 내용임. 압수수색절차와 관련해서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업장에 들어가서 서류를 조사하는 것은 압수수색권과는 다르며, 이 부분에 대해서 IBRD나 외국의 경쟁당국자들은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영장권을 공정위에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권고하고 있음. 다만, 압수수색권은 감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의 영장발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모든 공정거래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해결방법을 강구 중이며 사업자 입장에서 무조건 공정위가 조사할 때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재고해 볼 문제임.

Q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이나 사업자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IBRD에서 권고한 것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통신사업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처리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경우에 공정위가 정보통신부나 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우선적 관할권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정통부나 통신위원회와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조치를 계속할 것인지, 예를 들어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나 시정조치를 병행적으로 받은 경우도 있다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A 전기통신사업법이나 특정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일반적인 상거래에 관련하여 통신위원회가 인가 또는 승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질서에 반한다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카르텔일괄정리법을 만들어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22개 분야의 카르텔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자단체가 가격설정을 하는 행위등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었지만 이것을 일괄정리법을 통해 전부 효과가 중지되고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임.

Q 대기업의 계열사도 아닌 매출액이나 총자산이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동종 업계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한 두 기업이 결합을 하는 경우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되어 동종업계에서 1위로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한 기업결합신고를 할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

A 기업결합의 신고는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 기업결합을 한 결과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다만,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집단의 계열사인 경우는 그룹 전체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감안해야 되는데 그룹내의 중소기업은 거의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됨. 합병후 점유율이 1위인(1위의 개념은 50% 이상)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음. 그러나 점유율이 50% 이하더라도 3개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이고 1위의 사업자인 경우 2위 기업과 점유율의 차이가 1/4 이상일 경우에는 문제삼게 됨. 이럴 경우 50% 이상이 아니더라도 규제의 대상이 되며 5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됨.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1억불 이상, 일본은 100억엔 이상, 독일은 5억마르크 이상을 신고기준으로 하고 있음. 우리 나라의 현재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감안해서 설정한 것이며 특별히 우리 나라만 그 기준이 높거나 낮은 것은 아님.

Q 독일의 경우 심결결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경우 50% 이상 피심인이 승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경우 피심인이 승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A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못하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하는 경우는 드뭄.

Q 이의신청을 해서 미움을 사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그런 점이 있어서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적을 수도 있음.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정위는 일반 사업관계에서의 원사업자와 하도급자가 아님. 위원장은 항상 교체되고 담당직원도 교체되므로 법에 호소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법에 호소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미워하지는 않을 것임.

Q 행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가치판단에 대한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위원회가 조사권을 가지고 판결가지도 하는데 문제가 있음. 이의신청에 대해서 효과가 없으며 객관적인 사람으로 특별심판소를 설치, 판결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어떤 사람을 전문가로 하여야 하느냐가 문제임. 위원회가 다시 판단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음. 개인적으로는 이의신청제도를 없애고 바로 법원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또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1차 심사는 기업결합과에서 담당하나 이의신청은 다른 국의 과에서 이를 행하고 있음. 같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 는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Q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할 때 동일계열사에 두 회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두 회사를 하나로 간주하여 같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품목별로 구분하여 시장점유율이 1사의 경우 50%,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인 품목만 시장지배적 품목이라 하여 관련된 사업자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음. 참고로 '99년부터는 사전에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특정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직권조사를 한 경우 당해사업자가 그 당시의 시장지배적지위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가 있으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간주하게 됨. 따라서 예를 들면 대형할인점 같은 유통업체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특정지역에서 시장지배적지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간주하게 됨.

Q 합리적인 차별적 취급문제인데, 대리점이 거래를 할 때 대리점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업전략상 일반적으로 큰 대리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 대량구매 등에 따른 원가차이의 반영이 문제가 되는지?

A 기본적으로 확실한 것은 대리점 관계가 아닌 개별적 거래관계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자에 대해 할인해 주는 정도는 당연히 합법적이며, 매출고가 큰 대리점과 매출고가 적은 대리점 사이에 공급가격을 달리했을 경우 대량구매라기보다는 대리점간에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현재 공정거래법상 주로 국내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만 거론되고 있는데 시장개방이 진행되면 국내시장에서의 해외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도 규제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심결사례 등을 찾아봐도 해외기업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저촉이 되어 규제된 사례는 볼 수 없는데 앞으로 시책방향은?

A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차별없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우리 영토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영토관할권에 따라 국제법상 자국법에서 심리를 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집행력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 외국벤처사가 우리 나라 대리점과 거래를 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해 벤처사에 대하여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음. 다만 다국적기업인 경우 국내의 자회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들어온 경우 자기지점이라든지 자회사에 대한 외국사업자 지분에 대해서 압류는 할 수 있게 지침상 규정되어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외국인인 이상 그 외국의 사업자가 자회사형태든 직접진출형태든 국내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법으로 제재는 곤란하며 현실적으로 외국회사에 대해서 직접 제재한 경우는 없으나 외국인투자회사 즉, 다국적기업의 국내회사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인가등록을 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됨.

Q 설계변경시에 전자시스템을 매개로 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가격을 전자합의사인으로 할 수 있는지?

A 전자매개로 전자합의사인이 가능함.

Q 공사의 일정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전자통신에 의할 때에 E-mail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A E-mail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추후에 법시행령에 기준을 만들고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Q '81년도 시행 공정거래법은 '80년도의 경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

조업체의 불공정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앞으로 유통부문 불공정거래관행도 포함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E-mart등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에 대한 의견은?

A 앞으로 마련할 법체계에 시장지배적사업자 뿐만 아니라 수요독점의 한 유형인 대형 유통업에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법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Q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들이 타법과 복합적으로 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건설담합관련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으로 이중규제가 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으로 단일화 시켜 규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A 각 부처별로 법이 있는데 그중 공정거래법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 공동행위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정위가 국제적인 움직임에 맞춰 OECD 등 경쟁정책의 방침에 따라 카르텔을 일괄정비하는 작업을 추진중임.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하는 행동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서에서 각 개별법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는 우리법과 배치되는 법을 줄여야 부처간의 형평있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다른 부처에서 법개정시에 경쟁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법률상의 중복등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 시정할 계획임.

Q 다양한 업종이 협회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통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업종별이나 사안별로 분과위원회 형태의 모임을 통해 실무자들이 느끼고 있는 사안들을 집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

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

A 매일 현안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종합하여 건의하는 조직을 검토하였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방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모색할 예정임.

Q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급습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책은?

A 조사시에는 사전에 조사를 미리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독일의 경우에는 기업에 조사를 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해 영장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 수색하는 강력한 조사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예고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시에는 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회사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Q 최근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상이익률이 -2%정도로 과징금을 매출액의 몇퍼센트로 하는 것은 한해 그 기업의 이윤을 거의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한 기업의 각각의 사업부문에 대해서 매출액의 몇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설정해주었으면 하며, 세계의 추세가 과징금부과와 같은 중벌과 시정명령같은 경벌 중 어느 쪽을 많이 부과하고 있는지? IMF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A 그동안의 법운영의 조치를 보면 시정조치가 많았음. 그러나 최근 시정조치는 경험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기업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판단하에 과징금제도가 도입되었음. 행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율이 달라지는데 범위반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과중하게 부과하는 측면에서 기준이 설정되었을 것임. 공정위의 위상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 기업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됨. 우리가 IMF를 맞게 된 이유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데 있기 때문에 세계의 경쟁에서 이겨나가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

거래법상의 조치가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독일의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부과 경우 사업부 단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의사항은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독일의 경우는 부당한 행위로 인해 증가된 매출액을 전액 다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한국공정경쟁협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발족

민간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공정거래 정책에 관한 대정부건의 등 업계와 교량 역할을 수행할 민간 단체의 필요성이 업계와 정부에서 제기되어 '94년 1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주요 기업체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협회 설립 발기위원회를 구성, '94년 11월 23일 창립총회를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 (1) 공정경쟁관련 출판 및 홍보사업
 - 공정거래제도 해설집 발간·배포·기타 각종 자료 발간
- (2)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이해 제고
 - 교육 연수(강좌, 설명회 등)·세미나 개최·상담사업
- (3) 공정거래 관련 동향과 정보서비스 사업
 - 정보지 월간 「공정경쟁」 발간·배포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제도와 정책 운용 방향에 관한 정보 제공
- (4)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5) 회원의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제도 개선 사업
 -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건의·외국의 공정거래제도 동향 연구
- (6) 공정경쟁 제약 및 규제의 완화
 - 경쟁 추진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 개선·경쟁라운드에서의 사전 대비

'98년도 주요사업

- (1) 공정거래법 주요내용과 운용 방향을 포함한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교육 및 연수
- (2)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논문, 심결의 내용 분석, 경쟁정책에 관한 학계·재계 등 각계의 논란 및 해외 동향 등을 수록한 월간 「공정경쟁」지 발
- (3) 공정거래법에 관한 해설집발간